



의 안 번 호	제54호
회 의 연 월 일	2026. 5. 4. (제587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6. 4. 21.

인사담당관, 인사운영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략)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출산휴가와</u>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u>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